

2022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접수 관련 안내

(집단연구지원팀, 2021.12.09.)

1.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변경사항 ※ **수정된 양식 사용 필수**

□ 선도연구센터(SRC, ERC, MRC, CRC, RLRC)

| 구분 | 변경 내용 |
|----|--|
| 추가 | ▪ e-RND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양식 안내 - 본문2 를 포함한 전체 양식 공개 |
| 수정 | ▪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사항 수정 [S/E/M/CRC - 첨부5], [RLRC - 첨부4] - 연구인력지원, 연구기기지원에 대한 설명 추가 - 운영인력 지원 양식 수정 및 설명, 기준 추가 |

2. 신규과제 지원 관련 유의사항

1) 연구책임자 자격 관련

- 최소 참여율이 폐지되는 대신,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 연구개발사업(기초연구사업 포함)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.(타 집단연구사업 및 리더연구는 중복수행 불가)

※ 단,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

※ 3책5공과 무관하게 사업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, 3책5공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함

2)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사항 관련

- 신규과제 신청요강에 명시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확약사항을 반드시 지원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특히, 전용공간과 행정전담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며, 해당 비용을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.

※ 기타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신청요강 및 연구개발계획서 참고

-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사항은 추후 수정이 불가하며, 미이행 시간접비 조정 또는 과제 중단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신규과제 신청 및 제출에 앞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) 선도연구센터 신청요강 정정 안내

* 선도연구센터(SRC, ERC, MRC, CRC)

- (p6. 민간연구소 기준 부분) “참조 p9.” → “참조 p13.”
- (p11.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중 CRC 공동연구진 구성 부분)
“최소 10명 이상 여부” → “최소 8명 이상 여부”

*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(RLRC)

- (p5. 민간연구소 기준 부분) “참조 p14.” → “참조 p13.”

4)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

-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단위과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, 연구개발비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. 별도의 연구비 분할 지급 방법이 부재하오니, 연구진 구성 및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시 참고바랍니다.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일괄지급 후,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간접비 계상

※ 2022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요강 「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」 참조